

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유치 및 추진을 위한 민·관·학 상호협력 협약서

마을대표(이하 “마을”이라 한다), 서울특별시성북구청(이하 “구청”이라 한다),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(이하 “지원청”이라 한다)은 『서울형혁신교육지구』 사업 유치 및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“안전한 환경, 행복한 배움, 건강한 성장의 성북교육생태계”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정 유치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범위) 마을, 구청, 지원청, (이하 “민관학”이라한다)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유치 및 추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·물적 교류 등의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데 동의하며, 본 협약에 의한 각종 사업은 민관학의 상호협의를 따라 진행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민관학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상호 노력한다.

1. 『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』 지정 및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
2. 공모선정 후 ‘성북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’(가칭)회 운영
3.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
4. 기타 성북구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사업

제4조(상호협의를) 민관학은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협력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각 기관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, 협력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.

제5조 (협약의 신의성실 이행) 민관학은 ‘본 사업’이 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제반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.

제6조 (개인정보보호) 민관학은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·파기한다.

제7조 (협약의 중도해지) ① 민관학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관학이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2. 민관학이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
② 민관학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희망일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민관학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, 관련법령,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혁신교육지구 지정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, 지정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.

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.

③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관학의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월 8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대표

고춘식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

구청장 김 영 배 (인)

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

교육장 강 학 구 (인)